## 순환근무제 운영 지침

제정 2016. 12. 29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.)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한 순환근무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무경험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통한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순환근무에 적용하며 순환근무에 관해 진흥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3조(순환근무 대상)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.
  - ②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정기 인사이동 시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보 인원 및 부서는 본인 의사, 업무 연속성,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.
- 제4조(전문직무) ① 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지식·정보가 요구되는 직무를 전문직무로 정하고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② 전문직무 대상과 전보 제한기간은 업무 특성,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(2016.12.29)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